## 공동활용 연구장비 관리 지침

제정일: 2018.12.19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중인 연구장비의 공동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공동활용"이라 함은 연구개발,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타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 자가 운영부서를 거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공동활용 연구장비"라 함은 「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」에 의한 장비심의위원회의 공 동활용 심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공간에 설치 운영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.
- 3. "운영부서"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연구실 및 학과 또는 사업화 센터, 광운대학교 공동장비센터를 말한다.
- 4. "광운대학교 공동장비센터"라 함은 공동활용 대상 장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간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- 5. "장비책임자"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연구실 책임교원 또는 과제 책임자, 공동장비센터장 중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- 6. "이용자"라 함은 광운대학교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사용 및 시험·분석을 의뢰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.
- 7. "관리기관"이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회계상 자산으로 등록, 관리중인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수행업무)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보유한 장비책임자는 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1.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시간 배정, 사용법 등의 교육
  - 2.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직 인력을 지원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관리 및 분석 지원
  - 3. 보유 장비 이용시간, 재료비 등 장비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리
  - 4. 보유 장비 운영일지 기록 및 이용실적 관리, 장비 활용 성과 관리
  - 5. 장비운영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한 운영 관리
  - 6.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상시 활용 가능 상태 유지 관리
  - 7. 공동활용 시설장비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운영 관리
  - 8. 그 밖에 공동관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사업
- 제4조(적용대상 장비 등) ①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.
  - ② 관리기관장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운영부서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, 등록을 마친 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장비의 사용장소)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운영은 광운대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장비 이용신청 등) ① 이용자는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온/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이용 요청할 수 있다. ② 운영부서는 장비 이용 요청사항을 검토한후, 원활한 연구장비의 활용을 지원해야 하며 기관내 거래시 운영부서는 사전 관리기관으로부터 승

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운영부서에서는 공동활용하는 연구장비에 관한 일련의 사용기록을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 ④ 기타 사항에 관한 상세 이용절차는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.

- 제7조(장비사용의 중지 등)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.
  - 1.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해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장비 고장 및 수리 및 처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한 경우
  - 3. 기타 이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제8조(장비사용 결과)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하는 운영부서에서는 외부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활동이 종료된 경우 해당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 또는 승인없이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.
- 제9조(장비사용료 산정 및 납부) ① 이용자는 장비사용료를 운영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운영부서에게 시설장비 이용에 관한 적정 간접비를 정수할 수 있다. ② 장비사용료는 운영부서가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요율에 따르며 유관기관의 동일 장비 사용요율을 참조하여 산정한다. 단, 해당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정이 어려울 경우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을 준용할 수 있다. 운영부서는 이용자가 납부한 장비사용료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광운대학교「회계관리 지침」,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침「회계처리 규칙」,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④ 장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반출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사용료는 1일(24시간)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제10조(장비사용료 감면)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관리기관과 기타 외부 관련 기관 및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
  - 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 를 따를 경우
  - 3.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11조(사용책임) ① 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해당 장비의 고장, 파손 및 망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, 교육 연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.
  - ② 관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당해 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"책임보험증권"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2조(장비의 반출) ① 장비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연구, 학사일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할 수 있다.
  - ②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이 승인된 장비는 사전 운영부서에서 이용자에게 장비 반출에 관한 장비 인수증을 교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    - 이용자가 반출된 장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예산지원)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운영부서에 대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14조(운영세칙) 기타 장비운영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8년 12월 19일로 한다.